※「소득세법(所得稅法)」의 주요 내용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및 영리사업소득세로 구분한다. 영리사업의 89년도 혹은 이후에 속하는 영리사업소득세의 납부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액을 분배할 시 그 주주 또는 사원은 획득한 이익 총액 또는 이윤 총액에 포함된 세액은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결산신고세액 중 공제한다. 중화민국 79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는 소득세 징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손실 역시 소득액 중 공제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의 면세액은 1인당 한 해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액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연도의 지수와 비교하여 인상누적이 3% 이상에 달할 시 인상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총액에 대하여 면세액 및 공제액을 제한 후의 종합소득액에 따라 과세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총액은 한 해의 다음의 10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화민국 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개인이 소유한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은 마땅히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공제에 있어 경영하는 영리사업은 모두 이 법 제77조 에서 말하는 「남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사용하여 신고한 자에 한한다.

영리사업은 마땅히 정확하게 계산한 영리사업소득액의 관련 장부증빙 및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전항의 장부증빙 및 회계기록의 설치, 취득, 사용, 보관, 회계 처리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의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회계에 있어 회사 조직에 속하는 경우 마땅히 권책발생제(權責發生制)를 채택하여야 하며 회사 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래의 관습 또는 영리범위가 협소하면 동 관할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현급수급제(現金收付制)를 채택할 수 있다.

영리사업소득의 계산은 그 당해연도 수입총액으로 각종 자본비용, 손실 및 세금을 공제한 후의 순익액이 소득액이다. 영리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채, 회사채 및 금융채권은 마땅히 채권소유기간에 따라 채권의 액면가 및 이율로 이자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 총기구가 중화민국 국경 외에 있는 영리사업은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국제운수, 하도급건설공정,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계설비의 대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자본비용을 분담하여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기구

또는 대리인이 있는 지를 막론하고 재정부에 비준을 신청하거나 또는 재정부가 감사하여 국제운수업무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수입의 10%, 그 밖의 업무는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수입의 15%를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리사업소득액으로 간주한다.

상품, 원료, 물류, 제품, 완제품, 부산품 등의 가격은 실제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자본이 시가보다 높을 시 납세의무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본 또는 시가가 불명확할 시 동 관할 심사기관의 감정 또는 가격측정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영리사업소득액을 과징하는 영리사업은 마땅히 87년부터 시작하여 그 회계장부를 제외하고도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마련하여 분배대상인 주주와 사원의 소득총액을 기록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실시한 후 동 금액을 기록한 증빙과 장부를 보관하여 심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 설립한 영리사업의 경우 마땅히 설립일로부터 기재한다. 87년도부터 시작하여 영리사업의 당해연도의 이윤을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동 미분배이윤에 대하여 10%의 영리사업소득세를 부가징수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이 제6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매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전체 연도의 결산신고한 영리사업소득액 과세액의 이분의 일을 예납세액으로 하며 자발적으로 국고에 납입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예납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액납부 영수증을 첨부하고 일괄 심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마땅히 매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동 관할 심사기관에 전체 연도의 종합소득세 총액을 구성하거나 영리사업수입 총액을 구성하는 항목 및 액수를 신고하며 관련 감면, 공제의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결산신고서를 접수한 후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 소득액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동 관할 심사기관은 마땅히 조사결과를 세액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각 계산항목의 결과와 함께 납세의무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서의 기재 또는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통지서를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 동 관할 심사기관에 재조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 및 기타 관계인이 장부문서를 제공할 시 동 관할 심사기관은 영수증을 발부하고 장부문서를 완전히 제공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특수한 정황은 심사기관의 수장의 비준을 거쳐 반환시기를 7일 연장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이 다음 각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급부 시 규정된 원천징수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영리사업에 있어 대리하여 화물을 매매하면 마땅히 매매한 고객의

성명, 주소, 화물명칭, 종류, 수량, 거래가격, 일자 및 대금 등의 상세한 기록을 관련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각 창고에 저장한 화물의 고객명칭, 주소, 화물명칭, 종류, 수량, 단가, 창고임대금 및 입고, 출고일자 등을 화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관할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은 자주 인원을 파견하여 창고를 조사하고 그 전체 입고 및 출고 정황을 기록하며 창고의 장부와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제88조의 각 종류의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인은 마땅히 매월 10일부터 전 1개월 이내에 공제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년 1월 말 전에 전체 연도 내에 원천징수한 각 납세의무인의 세액을 원천징수 증빙문건으로 작성하여 동 관할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 전에 원천징수 증빙문건을 납세의무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액 및 원천징수의무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마땅히 세액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이 세액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인은 마땅히 통지서를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6조 1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주주의 공제가능세액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리사업은 마땅히 매해 1월말 이전에 전체 연도에 주주에게 분배한 주식배당금 또는 사원의 이윤에 주식배당금 증빙, 전체 연도 주식배당금 분배에 관한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동 관할 심사기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인이 은닉, 축소 또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당한 행위로 탈세한 정황이 있음을 고발 또는 신고한 경우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되면 심사기관은 마땅히 20%를 벌금에 처하며 고발인을 장려하고 아울러 고발인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비밀을 엄수한다. 전항의 고발 또는 신고상금에 있어 심사기관은 마땅히 상벌을 확정하기 전 아울러 벌금을 수수한 후 3일 이내에 원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기한 내에 수령하도록 한다.